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48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 : 염태영 · 정준호 · 이해식

박홍배 • 김우영 • 김남근

백혜련 • 이기헌 • 김영환

추미애 · 김태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던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창업 또는 신설·증설하는 경우(이하 "복귀"라 함) 국내복귀 후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 7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본 특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유인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외진출기업이 복귀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만드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등).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 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 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를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 4조의2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편 행	개 정 안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
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u>2027</u> 년 12월 31일까지 국내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	
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	
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	
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감면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제1	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	
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u>국내</u> 에서 창업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수있다.

1.	• 2.	(생	략)

② ~ ④ (생 략)

억제권역은 제외	한다.	이하	0]
조에서 같다)			
1.•2. (현행과 급	같음)		
② ~ ④ (현행고	가 같음	-)	